

야외고고학발간예규

제정 2006. 8. 18.
개정 2006. 8. 25.
개정 2007. 4. 23.
개정 2007. 12. 28.
개정 2008. 8. 12.
개정 2009. 12. 18.
개정 2009. 12. 18.
개정 2010. 9. 9.
개정 2011. 9. 29.
개정 2013. 3. 18.
개정 2014. 2. 13.
개정 2014. 3. 14.
개정 2014. 12. 11.
개정 2017. 2.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학술지인 『야외고고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과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7.4.23, 2014.12.11>

제2조(게재 글의 종류 및 조건) ① 학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종류와 조건을 충족하는 논문을 수록 게재한다.<개정 2011.9.29>

1. 게재논문의 종류는 연구과제 수행에 의한 논문, 자유투고 논문, 협회에서 의뢰하여 작성한 기획 논문 등으로 한다.<개정 2007. 12.28>
2. 학술지에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가. 매장문화재 조사 이론과 방법에 관한 글<개정 2006. 8.25>
 - 나. 협회 및 회원기관의 조사·연구 활동에 부합되는 글
 - 다. 고고학 일반의 연구논문<개정 2006. 8.25>
3.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연구동향, 비평논문 등에 관한 글<개정 2011.9.29>

② 예규 제2조 제①항의 제3호에 의한 글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1.9.29>

제3조(발간) ① 학술지는 연 3회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② 발간일은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개정 2008.8.12, 2010.9.9>

제4조(원고 투고의 자격) ① 학술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기관의 각급 조사연구전문

인력(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협회 임직원이 투고할 수 있으나, 편집위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비회원기관 소속 연구자도 투고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0.9.9, 2014.2.13>

②회원기관 연구원의 공동연구 및 회원기관간 공동연구를 통한 원고 투고를 권장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회원기관의 연구원이어야 한다.<개정 2014.2.13>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18, 2010.9.9>

②편집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2.13>

③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편집위원회 간사는 협회 정책개발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0.9.9, 2013.3.18, 2014.2.13>

⑤편집위원회 간사는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 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 편집과 발간 업무,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4.2.13>

⑥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18, 2014.2.13>

⑦편집위원회 회의는 협회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4.2.13>

제6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6.8.25>

1. 투고문에 대한 1차 심사<개정 2010.9.9>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결정과 처리
4. 기획논문의 집필의뢰<개정 2007.12.28>
5.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원고접수 및 마감) ①논문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모한다.<개정 2007.12.28, 2010.9.9, 2014.2.13, 2014.3.14>

②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해당 호 발행일의 3개월 전(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9.9>

③논문 투고를 원할 때는 [별표1] 논문 게재 신청서, 원고(한글파일), [별표3] 연구

윤리동의서, [별표4]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활용 동의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9.9, 2014.2.13, 2017.2.1>

④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요령은 [별표2] 야외고고학 원고 집필요령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2.13>

⑤ 투고문은 해당 호의 발간 일까지 외부에 발표 또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0.9.9>

제8조(심사과정) 투고문은 다음 각 호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개정 2007. 12.28, 2010.9.9>

1.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개정 2010.9.9>
2. 제출된 논문의 타당성 및 학술성 등을 종합하여, [별표5] 논문심사서를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개정 2010.9.9, 2017.2.1>

제9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장은 2차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논문당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의 게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07. 12.28, 2011.9.29, 2017.2.1>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전문가를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개정 2007. 12.28>

제10조(심사 기준 및 절차) 2차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17. 2.1>

1.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을 발송하기 전에 해당 논문의 필자를 인지 또는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성명, 소속, 각주 및 참고문헌 중의 줄고로 표기된 부분을 삭제한다.<개정 2014.2.13>
2. 심사위원은 연구주제와 내용의 일치여부, 논문체제의 적합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논문 내용의 학술성, 자료 및 참고 문헌의 신뢰성과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A,B,C,D로 평가한 [별표5] 논문심사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9.9, 2014.2.13, 2017.2.1>
3. 심사위원은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 판정을 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심사요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6] 논문심사 결과 판정

기준에 처리하되 2인 이상이 D로 평가한 경우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8.25, 2017.2.1>

5.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호의 학술지에 게재한다.<제정 2017.2.1>
6.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 필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수정요구 사항을 반영한 논문과 [별표7] 논문수정확인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검토한 후 해당 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제정 2017.2.1>
7.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 필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수정요구 사항을 반영한 논문과 [별표7] 논문수정확인서를 그 다음 호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개정 2009.12.18, 2010.9.9, 2014.2.13, 2017.2.1>
8.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필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투고한 논문을 반려한다.<제정 2017.2.1>
9.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2013.3.18, 2014.2.13, 2014.3.14., 2017.2.1>

제11조(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①논문심사에 관계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히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부득이 논문심사위원과 심사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연구비 지급) 제출된 글이 편집위원회 심의결과 게재가 확정된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 및 비회원기관 소속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0.9.9, 2011.9.29, 2013.3.18, 2014.3.14>

제13조(기획논문) 기획논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게재를 결정하고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9.9>

1. 협회에서 의뢰하여 작성한 기획논문은 논문심사를 생략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게재가 결정된 기획논문은 협회에서 정한 금액을 연구비로 지급한다.<개정 2010.9.9>

제14조(저작권) ①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된다.<개정 2017.2.1>

②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별표8] 저작재산권 양도동의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정 2017.2.1>

제15조(기타) ①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서는 별쇄본 30부와 연구 참여자 1인당 학술지 3부를 제공한다.<개정 2010.9.9>

②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예규는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개정 예규에 불구하고 금년도 발간을 진행 중인 야외고고학 제8호 및 제9호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1.9.29., 2014.12.11, 2017.2.1>

『야외고고학』 제 호 논문게재 신청서

성격구분	<input type="checkbox"/> 연구논문 <input type="checkbox"/> 연구동향 <input type="checkbox"/> 비평논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논문명				
연구 책임자	이름		소속기관	
	주민번호		직위(직급)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공 동 연구자 (해당자만 기재)	이름		소속기관	
	휴대전화		직위(직급)	
	이름		소속기관	
	휴대전화		직위(직급)	
	이름		소속기관	
	휴대전화		직위(직급)	
<p>본인은 위 논문의 게재를 요청하며, 협회 야외고고학 발간예규 및 야외고고학연구윤리예규를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연구책임자 _____(인)</p> <p style="margin-top: 20px;">(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장 귀하</p>				

[별표2]<개정 2017.2.1>

『야외고고학』 원고 집필요령

1. (구성) 논문은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분량) 논문은 ‘한글’ 파일로 작성하되, 논지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면,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학보 인쇄 쪽수로 35쪽 이내로 하며, 35쪽을 넘는 경우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문자)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사용한다.
4. (요약문) 각 논문의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은 별도로 작성하되 제목, 필자명, 필자 소속, 요약문, 주제어의 순으로 하며, 분량은 학술지의 한 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章, 項, 目, 細目を 각각 I, 1., 1), (1)의 순서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넣는다. 목차에는 章과 項만 기재한다. 예>>
I. 서론 II. 문제 제기 1. 연구의 현황 2. 문제 제기 … VI. 결론
6. (주요 표기 및 원어)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예) 단행본: 『 』, 논문: 「 」, 작품: < >
학술 용어, 인명, 지명 등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각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국문 용어 또는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표기한다. 외래어의 한글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예) 거주적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빈포드(Lewis R. Binford), 산나이마루야마(三内丸山) 유적
7.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와 인용한 쪽수를 기재한다.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의 근거 보고서는 가능한 한 인용을 생략한다. 인용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단독 연구: (홍길동 1998) (홍길동 1998: 213) (홍길동 1998: 213-215) (Flannery 1976: 126) (홍길동 1998a, 1998b)
 - 2) 2인 공동 연구: (이몽룡·성춘향 1998) (이몽룡·성춘향 1998: 11) (이몽룡·성춘향 1998: 11-16) (Renfrew and Bahn 2004: 294)
 - 3) 3인 이상 공동 연구: (이몽룡 외 1998) (이몽룡 외 1998: 102) (이몽룡 외 1998: 102-116) (Blanton, *et al.* 1981: 223)
 - 4) 두 연구 이상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영어 등은 알파벳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한다.

(이몽룡·성춘향 1998; 홍길동 1998: 213, 2000: 54; Flannery 1976: 126; Renfrew and Bahn 2004: 294)

인용문 구성 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홍길동(1998: 213)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3)은……, 홍길동(1998: 213-215)은…….
-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3)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 1998: 213-215).
-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3)." 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8. (주)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다.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문헌의 순으로 하되, 논문과 저서 구별없이 한국어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영어 등은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순으로 한다. 또한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의 한글 자모순이나 알파벳순으로 1998a, 1998b 등으로 구분한다.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행본일 경우, 저자, 연도, 『책명』, 판수, 출판지: 출판기관의 순서로 한다.

(1)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제3판, 서울: 一志社.

② 번역서 :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서울: 학연문화사.

③ 발굴보고서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金海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4輯.

(2) 영어 등의 단행본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New York: Thames & Hudson.

2) 논문일 경우, 저자, 연도, 「논문명」, 『책명』, 호수, 쪽수, 출판기관의 순서로 한다.

(1)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논문

① 편저 수록 논문

田崎博之, 2005, 「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 『송국리 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145-214쪽,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제1집, 서울: 서경문화사.

②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 「慶州 九政里 出土 金石併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 1, 3-14, 歷史學會.

③ 학위논문

田中聰一, 2000, 「한국 중·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 영어 등의 논문

① 편저 수록 논문

Binford, L.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R. Binford and L.R. Binford, eds., pp. 49-60, Chicago: Aldine.

② 학술지 수록 논문

Bunn, H.T., L.E. Bartram, and E.M. Kroll, 1988, Variability in bone assemblages formation from Hadza hunting, scavenging, and carcass processing,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7: 412-457.

③ 학위논문

Feinman, G.,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ceramic production in the Valley of Oaxaca, Mexico,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0. (표, 도면, 지도, 사진)

표는 <표 1>로 표시한다.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목은 표상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도면, 지도, 사진 등은 <그림 1>로 표시한다. 본문 중이나 참고문헌의 뒤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표와 동일 방식으로 한다. 별도의 그림파일로 만들어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세부 편집 요령) 원고의 세부 편집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용지 및 여백

- (1) 용지 종류 : B5(4×6배판)
- (2) 용지 여백 : 위쪽 15mm, 머리말 10mm, 왼쪽·오른쪽 각 30mm, 아래쪽 16mm, 꼬리말 14mm
- 2) 문단 모양 : 章은 들여쓰기 하지 않고, 項, 目, 細目은 양쪽 정렬과 함께 첫줄을 들여쓰기하며, 줄 간격은 국문요약 150%, 본문 175%, 각주 120%로 한다.
- 3) 글자 모양
 - (1) 제목 : 기준 크기 19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2) 필자 : 기준 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3) 목차 : 기준 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4) 국문요약 : 기준 크기 10pt, 글꼴 중고딕, 장평 85%, 자간 -5%, 속성 보통,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 (5) 章 : 기준 크기 13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6) 項 : 기준 크기 12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7) 目·細目 : 기준 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8) 본문 : 기준 크기 10.5pt, 글꼴 신명조, 장평 90%, 자간 -5%, 속성 보통
 - (9) 표·그림 제목 : 기준 크기 10pt, 글꼴 중고딕, 장평 85%, 자간 -10%, 속성 보통
 - (10) 표 내용 : 기준 크기 9pt, 글꼴 중고딕, 장평 85%, 자간 -10%, 속성 보통
 - (11) 각주 : 기준 크기 8pt, 글꼴 중고딕, 장평 85%, 자간 -10%, 속성 보통
 - (12) 참고문헌 제목 : 기준 크기 12pt, 글꼴 신명조, 장평 90%, 자간 0%, 속성 진하게
12. (필자 소속, 연구비 출처) 필자의 소속은 논문 첫 쪽 각주 칸에 표기하며, 연구비의 출처는 그 아랫줄에 밝힌다.
13. 이 요령은 『야외고고학』 창간호의 원고모집(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동의서

투고자_____는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의 학술지인 야외고고학 제_____호에 투고하는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야외고고학 연구윤리예규에서 규정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약속합니다.

1. 연구자는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게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하여 정직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연구자는 사진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 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학술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_____(인)

공동연구자 _____(인)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활용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소속,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1) 야외고고학 학술지 발간을 위한 업무
-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야외고고학 발간을 위한 업무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수집목적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_____(인)

공동연구자 _____(인)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장 귀하

[별표5]<개정 2017.2.1>

논문심사서

논문번호	제 호	심사 일자	년 월 일
논문 제목			

심사내용

	심사항목	배점	항목단위 등급기준	등급	점수
가. 평가항목	1. 연구주제와 내용의 일치여부	20	우수(20-19), 양호(18-17) 보통(16-14), 미달(13-10)		
	2. 논문체제의 적합성	20	우수(20-19), 양호(18-17) 보통(16-14), 미달(13-10)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독창성	20	우수(20-19), 양호(18-17) 보통(16-14), 미달(13-10)		
	4. 논문 내용의 학술성	30	우수(30-28), 양호(27-24) 보통(23-19), 미달(18-10)		
	5. 자료 및 참고 문헌의 신뢰성과 적절성	10	우수(10-9), 양호(8-7) 보통(6-4), 미달(3-1)		
	총 점	100			
나. 게재여부	A. 게재 ()	B. 수정 후 게재 ()	C. 수정 후 재심사 ()	D. 게재 불가 ()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점 이하	

심 사 요 지

논문 제목 :
1. 심사 의견
2. 수정 요구 사항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서명 또는 인)

논문심사 결과 판정 기준

심사등급			판정등급	비고
심사위원(갑)	심사위원(을)	심사위원(병)		
A	A	A	계재	
A	A	B		
A	A	C	수정 후 계재	
A	B	B		
A	B	C		
B	B	B		
A	A	D		
B	B	C		
A	B	D	수정 후 재심사	
A	C	D		
A	C	C		
B	B	D		
B	C	C		
C	C	C		
A	D	D	계재불가	
B	C	D		
B	D	D		
C	C	D		
C	D	D		
D	D	D		

[별표7]<제정 2017.2.1>

논문 수정 확인서

논문 제목	
-------	--

번호	수정 요구 사항	수정 결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페이지 제한 없음

년 월 일

연구책임자 _____(인)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

○○○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발간하는 야외고고학 제__호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아래와 같이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양도합니다.

1. 위 호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도한다.
2.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한다.
3. 저작재산권의 양도료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야외고고학 발간비, 연구비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진다.
6. 본 동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7. 본 동의서의 효력은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_____(인)

공동연구자 _____(인)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장 귀하